

● 제285회 ●  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  
제1차 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
검 토 보 고 서

2019. 3. 7.

운 영 위 원 회  
수 석 전 문 위 원

# 【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】

의안번호 343

## I. 규칙안 개요

### 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박기재 의원 대표발의(찬성자 김소영 의원 외 12명)
- 나. 제안일 : 2019. 1. 28.
- 다. 회부일 : 2019. 1. 31.

#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# 가. 제안이유

- 의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의회홈페이지 회의 영상자료가 제공자 중심의 시청에 머무르고 있음.
- 이에, 자료 이용의 효율성 및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회의 영상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누구나 자유롭게 공개된 회의 영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서울시의회의 회의 중계 영상물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(안 제49조의3 신설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 타 : 해당 없음

## 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박노수)

###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본 개정안은 매 회기 종료 후 서울시의회가 제공하고 있는 회의 중계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근거와 운영방법, 상업적 목적 외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안되었음.

### 2 회의 중계 영상물 제공 근거 신설(안 제49조3 신설)

-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,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하며(지방자치법 제72조), 중계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서 개최하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는 영상으로 중계방송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(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2).
-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매 회기 종료 후 전자회의록과 영상회의록(본회의는 생중계, 위원회 회의는 녹화 중계)을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재해 오고 있으며, 제285회 임시회부터는 위원회 회의도 생중계할 예정임.
- 현재 전자회의록은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 후 복사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나, 회의 중계 영상물은 열람만 가능할 뿐 복사 또는 내려받기는 어려운 형태로 운영되어 왔음.
- 이에 본 개정안은 회의 중계 영상물에 대해서도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되, 의장으로 하여금 영상 자료의 제작·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하도록 하고, 해당 자료의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등 의회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고,

이와 관련해 의회사무처(의사담당관)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함(별첨1 참조).

- 다만, 조문의 오류가 있는 사항을 보완하는 등 일부 체계자구의 수정이 요구됨.

<표-1> 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신 설>	<p><u>제49조의3(영상자료의 제공)</u>  <u>① 의장은 제49조의2제1항에 규정된 회의 중계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,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·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.</u>  <u>②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</u></p>	<p><u>제49조의3(영상자료의 제공)</u>  <u>① (개정안과 같음)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라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—————.</u></p>

### 3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의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와 위원회 등 회의 중계에 관한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보접근성과 알 권리 보장, 의회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나, 일부 체계자구의 수정 보완이 필요함.

##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의견

### 규칙안 개요

- 의안번호 : 343호
- 발의년월일 : 2019.1.28.
- 발 의 자 : 박기재 의원(찬성자 : 김소영 의원 외 12명)

### 주요내용

- 시의회홈페이지 회의 영상자료가 제공자 중심의 시청에 머무르고 있어 자료 이용의 효율성 및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회의 영상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신설(안 제49조의3)

### 쟁점사항

- 없음

### 검토의견

- 회의록 홈페이지에 게재된 회의 영상자료 이용 활성화 및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영상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
- 제공 방법은 회의록 홈페이지 내 영상회의록에서 다운로드(내려받기) 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 정보 이용료 없이 사용토록 조치
  - 단, 회의 영상물은 공표가 가능한 홈페이지 게재 전자회의록을 기준으로 하며 제공 영상물은 특정 정치운동 자료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용 유도

## 붙임2 관련 참고 법령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72조(회의록)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.

④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. 다만,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57조(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) ①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.

### □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

제64조(녹음, 녹화, 촬영, 중계방송 등)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, 녹화, 촬영, 중계방송 등에 관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거나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□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

제46조(회의록)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.

(중간 생략)

제49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회의록 시디롬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. 다만,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.

⑥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·절차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49조의2(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)**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(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.)를 그 대상으로 한다.

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,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## □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

**제2조(회의록 구분)** 회의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### 1. 책자회의록

가. 보존회의록 :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또는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·날인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영구보존하는 회의록

나. 비공개회의록 : 본회의(위원회 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회, 이하 같다)의 의결이 있거나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을 게재한 회의록

### 2. 전자회의록

가. 전자임시회의록 : 회의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회의록 공표 전에 회의록원고를 전자화하여 인터넷에 게재한 회의록

나. 전자회의록 :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시디롬으로 제작하여 의원 등에게 배부하는 회의록